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기술품질인증 신설 및 국방첨단전략산업 지원〉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70호)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5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사항을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황명선의원안).....	4
2. 국방기술품질인증 신설(황명선의원안).....	9
3. 방산혁신전문기업·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 지정 및 국방연구개발 우선 참여 등 혜택 부여(황명선·유용원의원안).....	16
4. 수출지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업무 추가(황명선의원안).....	24

I. 제안경위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770호)

- 1)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7인
- 2) 발의연월일 : 2026. 3. 26.
- 3) 회부연월일 : 2026. 3. 27.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751호)

-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3인
- 2) 발의연월일 : 2026. 4. 30.
- 3) 회부연월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770호)

□ 제안이유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러-우, 중동 전쟁 등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 이러한 배경 하에 AI, 우주 등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여 전략적 육성 정책의 기틀을 잡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지속적인 육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출 지원에 한정하여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방산분야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증 비용·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도를 방위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접근해 중소·벤처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트랙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함. 또한, 인증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우수 기업은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방연구개발 참여와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및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방기술품
질인증의 운영 및 인증에 따른 혜택 부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라.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취소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의5 신설).

마.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및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하기 위한 혜택 부
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신설).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751호)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 전장의 양상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첨단전
략산업 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여 우
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
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
·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
서 체계적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사항을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황명선의원안)

- 개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여 동 산업의 동향과 육성 전략을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시키며, 방위산업 실태조사 대상에 국방첨단전략산업의 기술 및 기업 현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6조).

개정안에서는 국방첨단전략산업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u>“국방첨단전략산업”이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u>

② (생 략)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생 략) ③ ~ ⑦ (생 략)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② ·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u>국방첨단전략산업의 동향과 육성 전략</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무기체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방첨단전략산업의 기술 및 관련 기업 현황</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의 국방첨단전략산업 지원 등과 유사한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 디

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12개 분야에서 50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서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특화단지 지정, 인력양성,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임.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비교]

비고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개념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근거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정절차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
혜택	투자세액공제 35~40%, 전략기술 대상 R&D 투자 확대 및 정책금융 지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매칭투자 지원 등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부담금 감면
지정현황	12개 분야에서 50개 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양자 등)	6개 분야 19개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 방위사업청은 개정안에 따른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정할 예정인데,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기술 수준을 시급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우주·국방반도체 산업과 드론·대드론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 등의 지정을 우선 고려하고 있음.¹⁾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²⁾은 5년 단위로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행 기본계획('26년~'30년)에는 지속·상생의 방산 생태계 조성, AI 중심 국방첨단전략산업으로의 대전환 등의 정책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음.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26년~'30년) 주요과제]

(기업) 지속·상생의 방산 생태계 조성으로 매출 300조 달성
(국방 AI) 국방AI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국방 유·무인)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핵심기술 및 종합시험장 확보
(국방반도체)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시험/인증지원, 전문사업자 지정 등 국방반도체 기술자립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
(국방 우주) 국방우주 소부장 육성 및 발사체 산업기반 확충

1)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26년~'30년)에서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AI 중심 국방첨단전략산업으로 국방AI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핵심기술 및 종합시험장 확보,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국방우주 소부장 육성 및 발사체 산업기반 확충, 차세대 전투기 및 무인기에 적용가능한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인 2023 국방전략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을 방위산업 측면에서 구현한 것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연구개발 정책 및 추진방향, 국방중기계획의 방위산업 수요 및 분야별 획득방향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국방 첨단엔진) 차세대 전투기 및 무인기에 적용가능한 첨단 항공
엔진 독자개발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재구성

- AI, 우주 등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에서, 개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법적 개념과 그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대상에 국방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조사·분석하고 육성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2. 국방기술품질인증 신설(황명선의원안)

□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별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에 필요한 비용·시험장비·시설 등의 지원과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의 우선 참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국방기술품질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별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중에 인증 대상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대상이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운영하기 위하여

	<u>방산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게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대상, 목적별 인증의 신청·기준·절차·방법·갱신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0조의4(국방기술품질인증의 혜택)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 시험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수출지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의 우선 참여, 군수품의 품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인증의 목적에 따라 달리 부여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0조의5(국방기술품질인증의 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의3의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u> <u>2. 기술의 내용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u> <u>3. 정기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u>4.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u>

	<u>경우</u> <u>5.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u>② 인증의 취소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라 ‘수출용 군수품’에 한정하여 성능·품질을 인증³⁾하여 DQ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수출홍보를 지원하는 ‘방산수출인증’을 시행하고 있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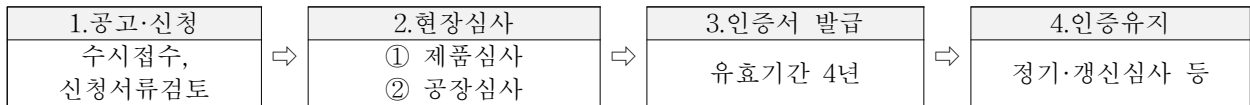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활용성이 증명된 수출용 군수품의 DQ마크인증(방산수출인증제도)과는 달리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제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출지원 등)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2.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3.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4.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⑧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절차 및 인증 취소 등 정부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2., 2026. 5. 19.>

1. 수출업체나 구매국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2.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 4) 현행 DQ마크인증(방산수출인증) 절차



5. 주요 인증혜택
①인증제품 매체·전시회·카달로그 홍보
②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등

품’ 등에 대한 인증(국방첨단인증)이나,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국방규격이 제정되고 품질이 안정된 군수품’에 대한 인증(군수품품질인증) 제도가 없어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전력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품질검사 등의 절차를 반복함에 따라 첨단기술 적용 무기체계 및 우수방산기업에 대한 정부품질관리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기술·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증 수요 역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방산수출인증을 포함한 포괄적인 인증체계인 ‘국방기술품질인증체계’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증 목적별로 구분하여 인증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국방부는 대통령령에서 현재 운영 중인 DQ마크인증(방산수출인증)을 포함한 국방첨단인증 및 군수품품질인증 등을 마련한 예정인데, 그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현행 DQ마크인증 등 국방기술품질인증체계 구성(안)]

구분	(현행)DQ마크인증	(신규)국방첨단인증	(신규)군수품품질인증
목적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국내 우수 제품등의 무기체계 활용도 제고 및 민간/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장벽 완화	고비용·장기간 소요되는 규격·검사중심의 품질관리를 인증으로 전환,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에 기여

대상	국내 기업이 생산한 수출용 방산물자등과 군수품	무기체계 활용 가능하나, 활용 이력이 없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기술·서비스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국방규격이 제정되고 품질이 안정된 군수품
혜택	수출 홍보지원	무기체계 연구개발 우선 참여	군수품 품질검사 면제
‘26년 예산	1.3억원	시범사업(우주, AI, 반도체) 예산으로 10억원 편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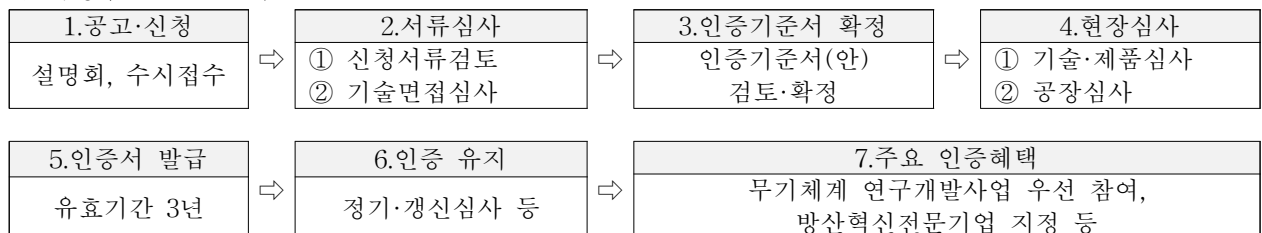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 먼저, 국방첨단인증제도는 국내 민간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 등에 대하여 정부가 그 성능·품질 등을 인증하고, 인증 제품이 무기체계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⁵⁾

[국방첨단인증의 주요 내용]

- (대상) 무기체계 활용 가능한 국내 우수한 제품, 기술, 서비스
- (인증기준) 무기체계 활용 가능성, 기술적 독보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공통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대상별 성능·환경 요구조건, 시험 평가방법 및 합/부기준 등의 개별인증기준을 마련해 성능 및 품질 인증

5) 국방첨단인증 절차



- (혜택) 인증된 제품의 무기체계 우선 사용
 - 인증된 제품 등을 통합DB(DISIS)에 등록
 - 선행연구에서 해당 무기체계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증품 식별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인증품은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안서평가항목에 반영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 재구성

주요방산업체(체계기업) 등은 국내 개발된 민간 또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첨단 제품 등이 있어도 제품의 신뢰성 문제와 공급망 변동 등에 따른 사업관리의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검증된 해외 제품 등을 선호하는 현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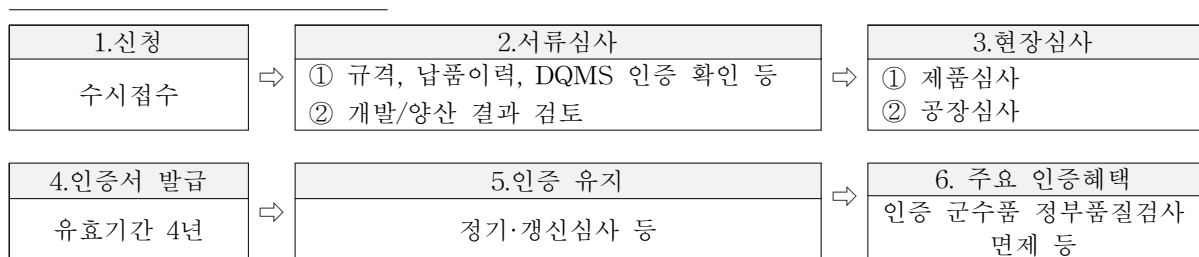
동 제도를 통하여 정부는 첨단 제품등에 대하여 성능·품질 등을 인증해 연구개발 착수 전에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인증품 활용도를 제안서평가에 반영⁶⁾하여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간 또는 중소기업의 방위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군수품품질인증제도는 신청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있고 국방품질경영체제를 갖춰 품질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규격·검사 중심의 현행 품질검사 방식을 인증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임.⁷⁾

6)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 단계부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증품을 식별하고, 식별된 인증품 활용도 등을 제안서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7) 군수품품질인증 절차(안)

최초 양산단계⁸⁾에서 품질이 안정된 체계 및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군수품품질인증을 부여하고, 후속양산 시 인증품에 대한 정부 품질검사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함으로써 획득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8)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사업은 시제품 전력화 이후 양산단계의 정부 품질검사 면제

3. 방산혁신전문기업·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 지정 및 국방 연구개발 우선 참여 등 혜택 부여(황명선·유용원의원안)

□ 두 개정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혁신전문기업 또는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안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자를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국방연구개발 참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신설).

유용원의원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방연구개발 우선 참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황명선의원안	유용원의원안
제10조의6(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국방첨단전략산업에서 국방기술품질인증	제10조의3(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의 지정·육성) ① 방위사업청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첨단소재 등 국방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이하 “전

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방산혁신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한다.

제10조의7(방산혁신전문기업 혜택)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혁신전문기업과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기술,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에 방산혁신전문기업을 우선 참여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하려면 국방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u>다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우선 선정 등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지정 대상·기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⁹⁾에 따라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으로 컨설팅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실증시험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¹⁰⁾

□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래 전장의 양상이 인공지능, 첨단소재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첨단

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7.>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지원)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0) 방위산업 경험이 없거나 진입 초기인 중소기업에게 기술, 경영, 법률, 행정분야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지원사업, 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 중소기업 개발 제품을 군 환경이나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실증해볼 수 있도록 평가비용 등을 지원하는 실증시험지원사업 등

전략산업 분야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 점을 고려하여 두 개정안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국방연구개발에의 우선 참여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미국 팔란티어¹¹⁾의 성장 과정에서 인큐텔(In-Q-Tel)의 투자를 통한 기업 신뢰도 제고와 정부와의 지속적인 계약을 통한 기술개발 및 노하우 축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넘어 정부가 초기 수요자가 되어 실증과 구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방첨단산업 또는 방산혁신기업의 성장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개정안과 유사한 사례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일정 품질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조달물자 품질 향상 및 판로 확대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11)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는 정부와 기업이 대규모 데이터를 통합·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2003년에 설립되어 미국의 대표적인 AI·방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미국 정부가 초기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실증과 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한 사례로 평가됨. 이러한 모델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시사함.

[우수조달물품과 방산혁신전문기업 혜택 비교]

구분	우수조달물품(현행)	방산혁신전문기업(개정안)
목적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 우수 중소기업 육성	무기체계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육성
대상	신기술·신제품인증, 특허, 실용신안 보유 중소기업 제품	국방첨단전략산업에서 국방첨단인증을 받은 기업
혜택	·수의계약 ·우선구매 권고, ·나라장터 등재 ·G-PASS(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선정 가점	·수의계약 ·국방R&D 우선 참여 ·방산육성지원사업 우선 선정

□ 한편, 앞서 살펴본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의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국방첨단전략산업 등과의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전략기술 등의 제도는 실제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하여 군 활용 적합성을 고려하는 체계가 아니며, 기술개발이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등 국방 계약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의 제품이 무기체계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요를 고려하여 전략적 투자·육성 분야를 직접 지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 등 유사제도와 국방첨단전략산업 지정요건 비교]

- (국가전략기술) ①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 ③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④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 등
- (국가첨단전략기술) ①공급망·안보에 미치는 영향, ②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③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④산업적 중요성, ⑤국민경제 영향성
- (국방첨단전략산업) ①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②전략적 투자·육성 필요성 (국방기술품질인증) 군사적 목적 활용 적합성 등

□ 두 개정안 가운데 황명선의원안은 국방기술품질인증 제도 신설을 통해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인증에 따른 혜택과 전문기업으로 인정되었을 때의 혜택을 각각 구체화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첨단전략산업 진입 유도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황명선의원안과 유용원의원안 비교]

황명선 의원안		유용원 의원안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	주요내용
제2조제1항 제6호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	해당 없음	
제10조의3	국방기술품질인증 운영		
제10조의4	국방기술품질인증 혜택		
제10조의5	국방기술품질인증 취소		
제10조의6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제10조의3	국방첨단전략산업 전문기업의 지정·육성·혜택
제10조의7	방산혁신전문기업 혜택		
제15조제3항 제4호	품질인증지원을 국방기술품질인증 지원으로 변경	해당 없음	
제18조제1항 제11호~제13호	국방기술품질원예 국방기술품질인증 심사 등 업무 위탁		

또한 황명선의원안의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정의, 국방기술품질인증 운영·혜택·취소 등의 내용은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실효적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 점을 고려하여 두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²⁾

12) 이 외 유용원의원안은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황명선의원안에서는 그 우수한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신설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인증받은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첨단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므로, 방산혁신전문기업에게 수의계약이나 국방연구개발 우선 참여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황명선의원안에서는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취소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정안 제10조의6제2항¹³⁾에서 유효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방산혁신전문기업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방산혁신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그러나 지정 취소는 지정제도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유용원의원안 제10조의3제4항 등을 참고하여 지정 취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절차 등은 개정안 제10조의5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 제10조의6(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방산혁신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한다.

4. 수출지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업무 추가(황명선의원안)

□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출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기술품질인증 심사, 국방기술품질인증 기준의 수립, 국방기술품질인증 관련 시설·기술 등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수출지원 등) ① · ② (생략)	제15조(수출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출을 위한 <u>품질인증지원</u>	4. ----- <u>국방기술품질인증</u> <u>지원</u>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제10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품</u>
	<u> <u>질인증 심사 및 정기심사</u></u>
<u><신 설></u>	<u>12. 제10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품</u>
	<u> <u>질인증 기준의 수립, 변경, 폐</u></u>
<u><신 설></u>	<u>13. 제10조의3에 따른 국방기술품</u>
	<u> <u>질인증 관련 시설, 기술 등 지</u></u>
<u>11. (생략)</u>	<u>14. (현행 제11호와 같음)</u>
<u>② (생략)</u>	<u>② (현행과 같음)</u>

□ 현행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에 중소기업 육성사업 업무 지원, 품질관리, 수출인증 등의 업무를 위탁 중임.¹⁴⁾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출지원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방산물자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방산물자등을 출품하는 자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개정안은 신설되는 국방기술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현재 수출품질인증, 품질관리, 중소기업 지원, 감항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2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